

제8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4. 1. 26.(서면)

□ 안건명 : 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심의
위 안전에 대한 제8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
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·반영하는 조건으로 '조건부채택'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제외지 단면변화는 하천법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할 것
즉, 단면변화가 없도록(도는 최소화) 할 것, 불가피한 경우 하천법 검토필요
- 1. 9. 기전설비 설계 5)수전지점 “현재 수전하여 사용 중인 전력계통의 수전용량
및 방식을 확인하여야 하며, 별도 추가 수전이 필요할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야
한다.” 로 내용 변경
- 2. 조정 분야 ‘가식의 경우 식재부분을 80% 만 적용’ 과업내용 보강 설명 추가
- 제안공모지침서 1. 기본방향 (1) 건물의 운영주체 및 유지관리방법에 대
한 내용추가
- 현재 다수 이용 중인 자전거 포함하여, 차량, 보행자, 자전거 이용 동선
으로 위계 분리 / 보관소 및 관리시설 등 검토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2024. 1. 17(수) 까지 본 검토서를 e-mail(dinoip@seoul.go.kr)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과업내용서 제1장 3. 과업의 개요 2)과업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 수정(p5) 제안공모지침서 IV 설계지침 2. 기본방향 가. 제안과제 중에서 일부내용 수정(p9) 당초: [과제 2] 기존 건물을 활용한 주민 일상 휴식 공간 및 수변여가 문화 공간계획 제시 ① 양천바이크라운지 리모델링을 통한 <u>공간의 재구조화</u> 변경예 : [과제 2] 기존 건물을 활용한 주민 일상 휴식 공간 및 수 변여가문화 공간계획 제시 ① 양천바이크라운지 리모델링을 통한 <u>공간 재구조화 마련을</u> <u>위한 아이디어 및 디자인 제안 제시.</u></p> <p>2. 과업내용서 제2장 1. 조사항목 1) 조사항목을 추가 필요.(p18) - 조경 및 자연생태조사</p> <p>3. 과업내용서 제2장 2. 조사내용에도 조경 및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내용 포함(p20) - 변경예 : 조경시설물과 하천생태복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서생물, 곤충류, 양서류, 어류, 포유류 등 동물상과 지피식생, 관목류, 교목류 등 식물상을 조사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4년 1월 17일

2024. 1. 17(수) 까지 본 검토서를 e-mail(dinoip@seoul.go.kr)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수자원 개발	1. 제안공모지침서 내 9페이지 제안과제 중 과제1 제외지 관련부분 (1) 제외지 단면변화는 하천법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시할 것 (2) 즉, 단면변화가 없도록(또는 최소화) 할 것, 불가피한 경우 하천법 검토 필요 (3) 제외지 단면변화시 수위변화 검토 등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결격기준으로 인해 사업추진 차질에 유의할 것 등으로 기재 필요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4년 1월 17일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기본 및 실시설계업무 과업 위계 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과업위계가 혼재되어 있어 건축(입면, 단면, 평면, 마감재계획 외), 토목(배수, 차도포장, 하천 외), 조경(조경식재, 조경시설물 외), 기전설비계획(조명, 에스컬레이터 외), 지장물이설계획, 교통처리계획, 유지관리지침서, 운영계획(개방, 에너지절약, 방재) 등 과업목적 및 설계주체에 따른 간결한 정리 검토 <p>2. 조경 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가식의 경우 식재부분을 80% 만 적용' 과업내용 보강 설명 추가- 이식 후 수목 관리 미흡에 따라 향후 이식 불가 사례 다수로, 이식 대상 수목의 수형 및 규격 기준 제시하고, 이식 대상 수목을 사업지 인근 정식 방안 검토(부지제안 권장)- 시설 안내 시 스마트폰(QR, 증강현실 외) 활용한 정보 제공안 검토 <p>3. 공통 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현재 다수 이용 중인 자전거 포함하여, 차량, 보행자, 자전거 이용 동선으로 위계 분리 / 보관소 및 관리시설 등 검토- 장소성 반영한 공간명, PGM, 사인물디자인 등 토탈 디자인 검토- 화재 알람 외 장마철 홍수, 동절기 결빙 시 진입 차단 안내 추가- Peak 시 이용자 수 예측에 따른 운영실, 관리실 등 면적 산정- 조닝별 최적 운영시간 계획 제시 / 관리 효율화 검토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4년 1월 17일

2024. 1. 17(수) 까지 본 검토서를 e-mail(dinoip@seoul.go.kr)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제안공모지침서</p> <p>1. 기본방향</p> <p>(1) 건물의 운영주체 및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</p> <p>2. 심사위원회</p> <p>(1)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방법 제안 내용 추가</p> <p>(2) 심사위원 사전공고의 타당성 검토</p> <p>과업내용서</p> <p>1. 과업의 내용</p> <p>(1) 주민의견수렴 : 인근주민 및 이용자(보행자, 자전거 이용자)에 대한 의견수렴</p>	
종합의견		

2024년 1월 17일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총괄	<p>1.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·분석 결과, 실적공사비를 비교·검토하여 산출하고,</p> <p>2. 인건비,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(전문기관) 자문(검증)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것</p> <p>3. 「5.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」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람 (7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)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1) 착수신고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④ 안전관리계획 <p>4. 「22. 기타사항」 내용 중 ()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시기 바람 (17p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·보고하여야 한다.(용역업체 → 발주처 → 기후환경정책과)	

2024년 1월 일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전 기	<p>[과업내용서]</p> <p>1. 9. 기전설비 설계</p> <p>1) 설계의 범위</p> <p>“조명설비계획은 주변 건축(시설)물 및 자연경관, 생태계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기능은 대상 건축(시설)물의 독창적 이미지 창출과 주변 시설물과 자연환경에 빛공해(장해광)를 발생하지 않는 조명기구 및 광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”로 내용 변경</p> <p>2)전력공급 계획 및 실시설계 관련</p> <p>(1) 전원공급체계 및 공법(기법)의 검토</p> <p>--> “전원 수전방식 및 부하 전력공급방식 검토”로 변경</p> <p>(3) 전기적 안전 및 관리상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검토</p> <p>--> “전기적 안전성,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적용 검토”로 변경</p> <p>(5)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모의실험을 통해 조명효과 예측</p> <p>--> “입체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도, 휘도분포 및 적용된 광원의 적합성을 검토”로 변경</p> <p>5)수전지점</p> <p>“현재 수전하여 사용 중인 전력계통의 수전용량 및 방식을 확인하여야 하며, 별도 추가 수전이 필요할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야 한다.”로 내용 변경</p> <p>2. 7. 플랫폼(시설물 및 보행데크 등) 설계</p> <p>8) 방재계획</p> <p>(1) 내진 안전성의 확보(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될 경우)</p> <p>②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(구조체), 건축 설비(전기, 설비, 기계설비) 및 건축 비(非)구조 ~</p> <p>“건축설비(전기설비, 기계설비)”로 수정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4년 1월 12 일